도보 충청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500호 2020. 5. 14.(목)

www.chungnam.go.kr



공주시 공산성

선람	기관의장	회람						

행복충만 충청남도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보 관 Tel:041)635-203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조 례

ㅇ 제4712호 :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

ㅇ 제4713호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20년 5월 14일

충청남도 조례 제 4712 호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카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시설(충청남도 및 시·군이”를 “재난피해시설[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풍수해저감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영 제74조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9. 영 제7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외의 법인·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을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 를 “제3조제4호” 로, “세대당” 을 “세대마다” 로, “소요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를 “(운용·관리)”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 회계관리)” 를 “(회계관리)” 로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6. 민간분야 기금 지원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충청남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양 승 조 

2020년 5월 14일

충청남도 조례 제 4713 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